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24호 2019. 07. 25.(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78호 사천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고시 -----1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864호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8
- 사천시 공고 제88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19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사천시 고시 제2019-178호

## 사천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 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천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고시합니다.

2019. 07. 18.

사 천 시 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식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2호에 따른 낚시인이 사천시 관내 낚시터로 허가 등록된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4조(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통영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제5조(유아 등 구명조끼착용) ① 낚시터에서의 유아는 보호자의 책임 하에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낚시터업자는 낚시인의 안전확보가 필요할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낚시터 이동 중 선상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인 준수사항) 낚시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터 및 낚시터 관리선에 정원초과를 요구하는 행위
2. 낚시터업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과도한 음주·가무·소란행위)
3.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금지기간,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5. 낚시터에서 낚시인의 안전관리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6. 영업시간 외에 낚시터 운영을 요구하는 행위
7. 낚시터 허가구역 외에서 낚시행위
8. 타 낚시인의 낚시행위에 방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낚시터 시설 및 쓰레기에 발화·소각하는 행위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제7조(낙시인 준수사항 게시 등) 낙시터업자는 본 지침 제6조의 낙시인 준수사항(별표1)을 포함한 그 밖의 낙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게시문을 낙시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발생의 보고) 낙시터업자는 낙시터 및 낙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별표 1]

## 낚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게시방법

###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또는 종이(코팅 시)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이용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낚시터의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 낚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

.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 낙시터 낙시인 준수사항

### □ 낙시인 준수사항

1. 낙시터 및 낙시터 관리선에 정월초과를 요구하는 행위
2. 낙시터업자의 구멍조끼 착용 및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과도한 음주·가무·소란행위 금지, 유아는 반드시 구멍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선상에서는 전원 구멍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낙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4.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5. 낙시터에서 낙시인의 안전관리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6. 영업시간 외 낙시터 운영을 요구하는 행위
7. 낙시터 허가구역 외에서 낙시행위
8. 타 이용객의 낙시행위에 방해나 위해를 가하지 행위
9. 낙시터 시설 및 쓰레기에 발화·소각하는 행위

사천시장 · 통영해양경찰서장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 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관련]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 올 우려가 있는 어종을 낙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낙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 또는 치어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 외국에서 수산동·식물을 국내반입·이식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국내반입 이식승인 절차를 거쳐 입식할 것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낙시터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훼손시키지 말 것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바다낙시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 라목1)

항목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 추출유분 (mg/L)
기준	6.5 ~ 8.5	1,000 이하	0.01 이하

○ 내수면(호소, 저수지)낙시터, 실내낙시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 나목2)

등급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otal phosp horus) (mg/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산생물의 서식지·산란지의 파괴·훼손 금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 그 밖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 관련]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관련]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위반 시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영업정지 6개월

**사천시장 · 통영해양경찰서장**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사천시 공고 제2019-864호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규 도로명 부여 및 기존 도로구간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도로명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25.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7. 25. ~ 2019. 8. 9.(15일간)
2. 공고내용 : 신규 도로명 부여 및 기존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조서(별첨)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 4. 의견 제출방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 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나. 전 화 : 055-831-2822 (FAX: 055-831-6929)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 5. 도로명의 결정 절차

도로명(안) 부여	의견수렴 공 고	의 견 제 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 위 원 회	고 시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부여	14일 이상	제출의견 검토/반영	30일 이내	심 의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 사 천 시 권 표

제624호

## 도로명 신규 부여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폭 위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유사 및 동일 도로명	부여사유
			기점		종점		중심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1	용현면	연호1길	용현면 선진리	485-3	용현면 선진리	684-3	도면 참조	880	6	20	1/88	해당 없음	연호길에서 일련번호 부 여	
2	용현면	관동1길	용현면 신북리	106-4	용현면 신북리	산138-1	도면 참조	400	3	20	1/40	해당 없음	관동길에서 일련번호 부 여	
3	고양면	모개골1길	고양면 홍사리	208-15	고양면 홍사리	산45-4	도면 참조	594	3	20	1/60	해당 없음	모개골길에서 일련번호 부여	
4	고양면	홍사매항비길	고양면 홍사리	191-5	고양면 홍사리	785	도면 참조	1440	3	20	1/144	해당 없음	홍사 매항비에 이름을 따 서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 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

일련번호, 도로명	1. 연호1길
도면(중심선)	

# 사 천 시 공 보

제 624 호

## 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

일련번호, 도로명	도면(중심선)
2. 관동1길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 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

<p>일련번호, 도로명</p>	<p>3. 모개골1길 4. 흥사매항비길</p>
<p>도면(중심선)</p>	

# 사 천 시 영 포

제624호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명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북 위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유사 및 동일 도로명	부여사유
			기점	종점	중심선	지번						
1	정동면	만마1길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277	6	10	1/52	해당 없음	만마1길 구간 연장
			정동면 합촌리	328-20	정동면 합촌리	323-13						
2	용현면	관동길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561	3	10	1/112	해당 없음	관동길 구간 연장
			용현면 신북리	225-2	용현면 신북리	82-1						
3	용서읍	마도길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331	3	10	1/68	해당 없음	마도길 구간 연장 (도시계획도로 구간)
			마도읍	46-3	마도읍	150-4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조서

일련번호 도로명	변경전 1. 만마1길	변경후
도면 (중심선)		

# 사 천 시 권 보

제624호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조서

일련번호 도로명	변경전 2. 관동길	변경후
도면 (중심선)		

# 사 천 시 권 보

제624호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조서

	변경전	변경후
일련번호 도로명	3. 마도길	
도면 (중심선)		

# 사 천 시 공 보

제624호

사천시 공고 제2019-881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7. 24.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7. 24. ~ 2019. 8. 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58소 3337	모하비	신*현	2019. 7. 24.	소유자 요청(불명자 운행)

###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